

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6. 03. 20.)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0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(2026. 04. 03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공동주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12조)
- (현행) 2026년 6월 30일 → (개정) 2031년 6월 30일

3. 제안근거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6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
 - ▶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함.
- 종합검토 결과,
2025년 11월 12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26년 2월 24일 입법예고를 완료하는 등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